

보건복지 ISSUE & FOCUS

KIHASA
한국보건사회연구원
Korea Institute for
Health and Social Affairs
www.kihasa.re.kr

제 315호 (2016-15)
발행일 2016. 05. 30.
ISSN 2092-7117

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(30147)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(1층~5층) TEL 044)287-8000 FAX 044)287-8052

사회복지분야 민간모금기관 간 모금액 격차 현황과 과제



고경환
정보통계연구실 연구위원

- 최근 사회복지제도의 확충과 성숙으로 공공재정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욕구 증대로 자발적 민간모금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.
- 그러나, 모금액 상위1.2%기관이 전체모금액의 77.3%를 독점하는 반면, 하위 64.6% 기관이 1%를 모금하는 큰 격차 발생.
- 소수 기관의 복지자원 독점현상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현안해결을 위한 복지주체의 다양성,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독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.
- 모금기관 간 공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, '지역단위의 공동모금시스템 구축', 훈련된 모금인력의 마이너급 기관 지원, 기부자와 서비스공급자 간 정보공유를 매개하는 포털사이트의 구축이 필요.

1. 들어가며

■ 최근 사회복지제도가 확충, 성숙되면서 공공재정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증대로 자발적 민간모금의 중요성이 높아짐.

- 민간모금은 민간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나눔참여를 통해 공공부문의 공급기능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자원임.

■ 국세청에 신고된 2014년 기준 전체 민간모금 규모는 약 12조원이지만 세부적으로 사회복지분야의 모금규모, 모금원천, 모금기관 간 격차 분석을 실시하고,

- 개인과 지역사회의 욕구와 현안을 담아낼 복지주체의 다양성과 독창성을 살릴 차원에서 살펴보고 정책과제를 제안함.

- 자료는 국세청 홈텍스에 공시된 결산서¹⁾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자료를 활용함.

- 공시법인들은 2014년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자산총액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유형의 공익법인.

1) 국세청과 한국가이드스타에 의해 공익법인의 회계결산서를 지난해부터 사용가능.

2. 민간모금과 격차 현황

■ 국세청 홈텍스에 공시된(2015년 4월) 2014년 사회복지유형의 공익법인은 1,485개임.

○ 공익법인은 1940년대 말부터 설립이 시작되었으나 전체기관의 50%는 2000년 이후 확충됨.

- 이들 기관의 고유목적사업대상은 노인(52%), 아동(50.7%), 장애인(45.6%), 그리고 청소년(30.5%, 중복응답의 결과)의 순임.

■ 2014년도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모금총액은 1조 7,706억 원이고, 모금원은 기업·단체기부금 47.4%, 개인기부 32.1%, 기타기부금 9.7%순임(표 1참조).

〈표 1〉 사회복지 공익법인의 민간모금액 현황(2014년)

(단위: 억원)

	계	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등에 의한 모금액 ¹⁾	개인 기부금 ²⁾	행사 모금액 ³⁾	기업, 단체 기부금 ⁴⁾	모금 단체, 재단의 지원금 ⁵⁾	기타 기부금 ⁶⁾
총 액	17,706	869	5683	98	8,393	942	1,724
(%)	(100.0)	(4.9)	(32.1)	(0.6)	(47.4)	(5.3)	(9.7)

주: 전체기관 수 1,466, 결측값 25

1)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에 따라 모금한 기부금

2) 개인기부자(후원회원 포함)의 기부금

3) 온라인 모금과 자선 바자회·경매 등의 모금 행사를 통한 기부금

4)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기업과 계약을 맺은 기부금과 다른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

5) 전문모금 및 기금배분단체(예: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)의 기업재단 등 외부공모,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

6) 1)부터 5)까지 외의 기부금

■ 한편 100억 원 이상을 모금하는 상위 18개 모금기관들은 총 1.36조원을 모금(표 2 참조). 이는 상위 1.2%의 모금기관이 전체모금액의 77.3%를 모금한 것임.

○ 이들 메이저급 모금단체들은 풍부한 인적자원과 전문성, 알려진 이미지, 다져진 신뢰성 등을 바탕으로 개인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정 또는 고액기부를 모금함.

- 민간모금액이 메이저급 단체에 쏠리는 현상은 미국 영국도 유사한데 미국은 Top 50개 모금기관(Foundation)이 전체의 42%(2013년)를 모금²⁾, 영국은 1%의 기관이 전체모금액(370억 유로)의 절반을 모금함.³⁾

■ 나머지 99%의 모금단체들은(1,467개) 전체모금액의 22.7%인 4,025억 원 모금(표3, 그림 1 참조).

○ 이들 단체들은 모금하는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이 없다고 응답한 기관이 각각 81.1%, 77.3%임.⁴⁾

- 전담인력이 1명 있는 곳이 17.2%에 불과함. 모금방식은 인맥모금이 83.6%로 가장 높으며 전화우편물 76.1%, 홈페이지 모금 64.2%, 행사캠페인 35.1% 순임.

■ 특히 전체모금액의 1%인 177억 원은 하위 64.6%(959개)⁵⁾의 기관이 모금함.

○ 메이저(major)급 기관⁶⁾은 꾸준한 기부자 관리와 일

〈표 2〉 상위 1% 모금기관과 모금액 현황

(단위: 억원)

순위	법인명	모금액	순위	법인명	모금액
1	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	5,833	10	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	264
2	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	1,802	11	(재)홍익회	262
3	(복)삼성생명공익재단	1,119	12	(복지)한국사회복지협의회	198
4	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	1,049	13	사회복지법인 씨제이나눔재단	155
5	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	703	14	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	140
6	(사)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	589	15	사회복지법인밀알복지재단	137
7	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	445	16	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	137
8	대한적십자사	326	17	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	109
9	(재)삼성복지재단	311	18	(재)롯데복지재단	100

2) foundation center Home page(data.foundationcenter.org)

3) UK Civil Society Almanac 2012; The Guardian, 2012.4.24.

정한 운영비를 지출함에 비해 마이너(minor)급 기관⁷⁾은 부족한 정보력과 인적, 물적 자원, 일부 지역에 알려진 낮은 이미지와 정착되지 않은 투명성 등으로 운영.

〈표 3〉 모금액 ‘상위1%’와 ‘나머지99%’ 기관^{주)}, 하위기관 간 격차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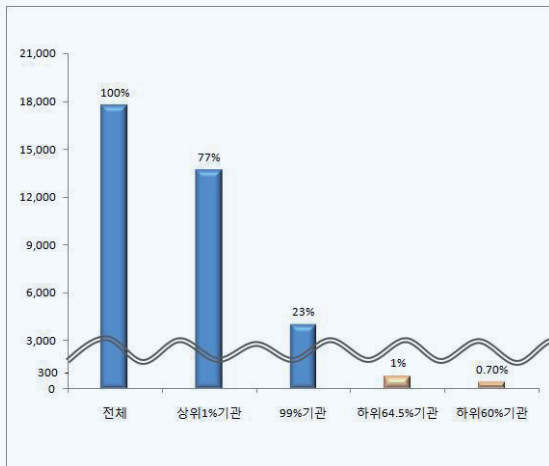
(단위: 억원, %)

	전체(A)	상위1% 기관(B)	99%기관(C)		
				하위64.5% 기관	하위60%기관
총액	17,706	13,681	4,025	176.7	124.4
%	100.0	77.2	22.7	1.0	0.70

주: 모금활동을 하였으나 모금하지 못한 432개 기관 포함

〔그림 1〕 민간모금기관 그룹별 모금액 격차비교

(단위: 억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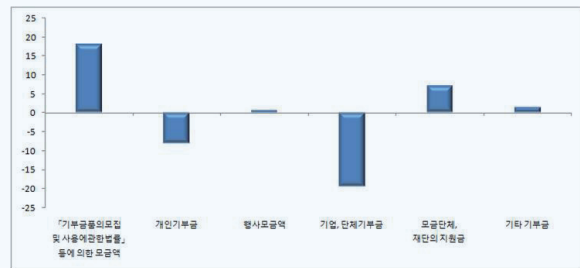


■ 두 집단 간 모금원의 차이를 보면 먼저 ‘나머지 99% 법인’은 ‘기업과 개인’에서 대부분(85.7%)을 모금하는 ‘모금액상위 1% 법인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(58.3%), ‘기부금품법률모금과 모금단체·재단지원금’에서 상대적으로 높음(19.0%, 표 4, 그림2 참조).

○ 다음 ‘전체모금액1%법인’은 ‘모금액상위1% 법인’에 비해 ‘기업과 개인’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고 (52.4%), ‘기부금품 법률모금과 모금단체·재단지원금’에서 상대적으로 높음(28.0%, 표4 참조).

- 그 이유는 ‘나머지 99% 법인’과 ‘전체모금액 1%법인’들은 전체 모금액 중 지속성이 약한 개인의 일회성 비정기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, 자금운용의 자율성이 있는 기관운영비 보다 당장 시급한 프로그램사업비 모금에 급급하기 때문으로 보임.

〔그림2〕 모금액‘상위1%기관’대비‘나머지99%기관’의 모금원 구성비중 차이(%)



〈표 4〉 모금액 ‘상위1%’와 ‘나머지99%’기관, 전체모금액 1%기관 간 모금원의 비중차이 비교

(단위: %)

	계	「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」 등에 의한 모금액 ^{주)}	개인 기부금	행사 모금액	기업, 단체기부금	모금단체, 재단의 지원금	기타 기부금
모금액 상위 1%법인(18개, A)	100.0	0.8	33.9	0.4	51.8	3.7	9.4
나머지 99%법인(1,467개, B)	100.0	19.0	25.9	1.0	32.4	10.7	11.0
차이(B-A)		18.2	-8.0	0.6	-19.4	7.0	1.6
전체모금액 1%법인(958개, C)	100.0	28.0	35.8	1.3	16.6	5.0	13.3
차이(C-A)		27.2	1.9	0.9	-35.2	1.3	3.9

주)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모집 등록청에 등록한 모금액(2014년 시행).

4)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영 실태와 제도개선방안, 2015.

5) 모금하지 못한 432개 기관을 제외하면 35.4%

6) 상위1%모금기관을 지칭

7) 상위1%모금기관을 제외한 99%모금기관을 의미

3. 모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

■ 모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, 모금전담인력, 모금겸무인력, 그리고 후원자 관리 중 모금 캠페인과 특별행사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⁸⁾.

- 모금전담인력이 1명 증가할 때 기부금 수입이 12.6% 증가함(0.01% 수준에서 유의).
- 모금겸무인력이 1명 증가할 때는 기부금 수입이 14.6% 증가함(10% 수준에서 유의).
- 또한 후원자 관리 중 모금 캠페인과 특별행사를 할 때 기부금 수입이 28.3% 증가함(10% 수준에서 유의).

4. 정책과제

■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할 복지주체의 다양성 측면에서 소수기관의 복지자원 독점현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언

■ 지역단위의 공동모금시스템 구축

- 지역사회 의 욕구나 문제해결을 목표로 주민에게 기부동기를 부여하고 다양한 방법(오프라인과 온라인)으로 기부자를 모으는 민간과 지역중심의 모금을 제안함. 특히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모금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경우 비용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력이 낮아 지역단위의 공동모금시스템 구축이 필요함.
 - 모금주체는 전문모금기관이 되고 지역재단, 시민단체 등의 주체들이 연합하는 협력구조의 모금 방법으로.
 - 모금인력은 주체기관들의 파견인력, 문화이벤트 등 간접 활동하는 모금자원봉사자, 수습과 경험 이 필요한 청년인턴 등.

- 자원배분은 지역 내 사업열정과 서비스 공급능력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마이너급 기관들에 배분.

■ 훈련된 모금인력을 마이너급 기관에 지원

- 영세한 모금단체들이 전담모금의 인력이나 부서를 배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.
 - 지역단위의 공동모금시스템에서 훈련된 기존 및 신규인력의 배치,
 - 메이저급 기관들이 청년인턴제를 활용하여 모금 교육과 훈련 후 배치, 능력에 따라 정규직화.
 - 아울러 마이너급 기관들도 자체 역량강화와 인력 재교육 필요.

■ 기부자와 서비스공급자 간 정보공유를 매개하는 포털사이트의 구축

- 영세 민간모금단체들은 정보력과 인적 물적 네트워크 능력이 낮으면서 한정된 모금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정보의 공유와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됨.
- 기부할 기업이나 개인은 자신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어느 기관이 하는지, 그들의 과거 사업성과 정보 등을 쉽게 볼 수 있어야 함. 반대로 서비스공급기관들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어떤 기관이 얼마나 배분하는가의 정보도 얻을 수 있는 매개 포털사이트가 구축되어야 마이너급 모금기관들에게도 모금 활동이 용이할 것임.
 - 미국의 Foundation Center의 온라인 재단 명부(Foundation Directory Online)에는 상당수의 기부 재단·기업들과 서비스공급기관들을 매개하는 데이터베이스로 모금과 배분 문화가 정착되는 데 큰 역할을 함.

8)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실태와 제도개선방안, 2015.